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0. 8. 27.(목) 10:00

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
향상을 위한 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18호
- 나. 제 출 자 : 강수정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0. 8. 19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8. 19.

2. 제안이유

금천구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에 관한 근거 마련 (안 제4조 및 안 제6조)
- 사회복지사의 실태 조사 근거 규정 (안 제7조)
-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포상 근거 규정 (안 제8조 ~ 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
 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 및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0. 8. 19. ~ 8. 24.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등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,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,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음.

다. 검토의견

-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력인 사회복지사 등은 저임금, 과중한 근로시간과 불안정한 고용형태, 안전문제 미비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속기간 등 인력누수현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,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고, 전문성 확보의 미비 및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저해로 이어져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실질적 처우 개선이 시급함.
-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보호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 제고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.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공지를 제고시켜 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, 상위법 및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사회복지법인“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

[시행 2019. 12. 12.] [법률 제15886호, 2018. 12. 11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“사회복지사 등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(이하 “사회복지법인 등“이라 한다)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
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12. 11.>

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<개정 2018. 12. 11.>